

# 북일고등학교 CCTV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북일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카메라 설치현황) 북일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223	각층 복도 및 건물 주변	학교 내 시설 전체

제4조(총괄·운영책임관 지정) 북일고등학교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CCTV설치 및 관리, 열람 등 총괄책임관을 북일고등학교 교감으로, 설치 및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학생 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 책임관은 안전생활부장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은 교육연구부장으로 정한다. 책임관 밑에 실무담당자를 두어 운영의 내실을 기한다.

총괄 책임관	교 감		
설치 및 관리 책임관	행정실장	설치 및 영상정보담당자	담당주무관
학생 보호 책임관	안전생활부장	학생 보호 담당자	담당교사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교수학습지원부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교사 및 주무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북일고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3일 이내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한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생 및 주민 통행이 많은 교문(정문)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CCTV설치 위치에 적정 규격의 촬영 알림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 CCTV 촬영중

1. 설치 목적 : 학교 시설물 보호 및 학생 신변보호
2. 설치 장소 : 학교 건물 내외부
3. 촬영 범위 : 건물 내외부
4.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5.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주간 : 시설담당 041-520-8606  
야간 : 당직자 041-520-8666

### 북일고등학교장

제7조(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북일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제5조와 관련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별지2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설치 및 관리 책임관'과의 협의 후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생안전사고 및 교내폭력사고 대응)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도난사고, 폭력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의 열람을 통해 사고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학생 복지 책임관'이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에는 '설치 및 관리 책임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의 협조를 구한다.

제12조(자체평가팀 구성) CCTV설치 및 운영상 발생 가능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요소와 취약성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체평가 팀'은 개인정보관리 총괄책임자(교감), 유지보수 관리 책임자(행정실장), 학생 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책임자(안전생활부장), 학교 정보 보안 관리 책임자(교육연구부장)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